

결산보고서

2022년 1월 5일

경인물류투자 유한회사 사원 귀하

상법 제5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은 2021년 11월 18일 경인물류투자 유한회사("회사")의 해산 이래 2022년 1월 5일 청산종결 시까지의 회사의 청산에 관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청산인은 상법 제5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청산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도록 1개월의 해산공고를 2021년 11월 22일과 2021년 11월 23일자로 2회에 걸쳐 연이어 인터넷 홈페이지(<http://lb-amc.com>)에 게재하여 공고하였고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였습니다.
2. 청산인은 상법 제53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해산의 사유 및 해산일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신고서를 2021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2일자 임시사원총회에서 승인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2021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청산인은 신문공고 및 개인별 최고 만료일 후 별첨 청산대차대조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추심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인물류투자 유한회사
청산인: 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

